

공공측량 안내자료



공간정보품질관리원
Spatial Information Quality Management Service

CONTENTS

- I 공공측량의 이해
- II 공공측량 시행절차
- III 공공측량 관련 주요 질문



01 공공측량 관련 법률



법률

legislation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절 공공측량 제17조 ~ 제20조)
(법률 제 19047호, 2022.11.15.)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제17조)
(대통령령 제33525호, 2023.6.11.)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제22조)
(국토교통부령 제1223호, 2023.6.11.)



관련사항

Related matters

- 측량법 제정
(법률 제938호, 1961.12.31.)
- 측량법 개정 제61조
(권한의 위임·위탁) (법률 제3898호, 1986.12.31.)
- 측량법시행령 개정 제50조
(권한의 위탁 등) (대통령령 제12376호, 1988.1.14.)
-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구, 대한측량협회)에서 1989. 3월 부터 ~ 2019.12.31.까지 수행(30년)
- 현,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행 중 (2020.1.1. ~)

건설부장관



대한측량협회장

02 공공측량 대상

공공측량

국가, 지자체 외
공공기관 대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본측량을 기초로 실시하는 측량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

일반측량 중
공공측량
지정고시 대상

② 그 밖에 공공의 이해 또는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측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3.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5. 지하시설물 측량
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
7.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03 공공측량 제도

국내 공간정보 품질관리체계 " 공공측량성과 제도 "



국가기관

조달청

외교부

병무청

환경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대한민국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무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국무위원회

국방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정부출연 연구기관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출자기관
-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의
사업시행자
- 도시가스 사업자
- 전기통신 사업자



04 공공측량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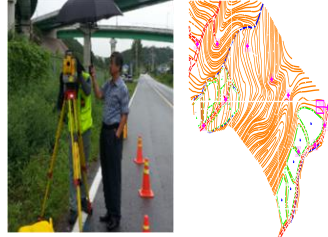
공공삼각점측량



공공수준점측량



지상현황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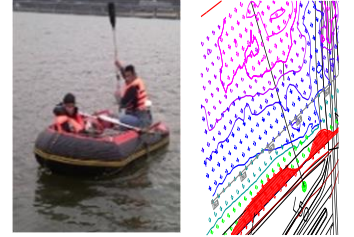
항공사진측량



무인비행장치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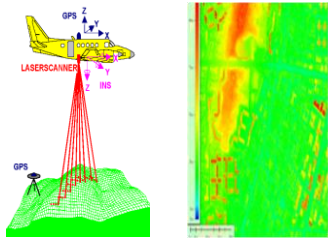
수심측량



수치지도제작



수치표고자료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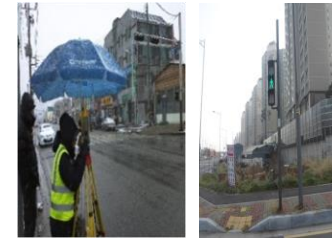
영상지도제작



3차원 공간정보구축



도로시설물측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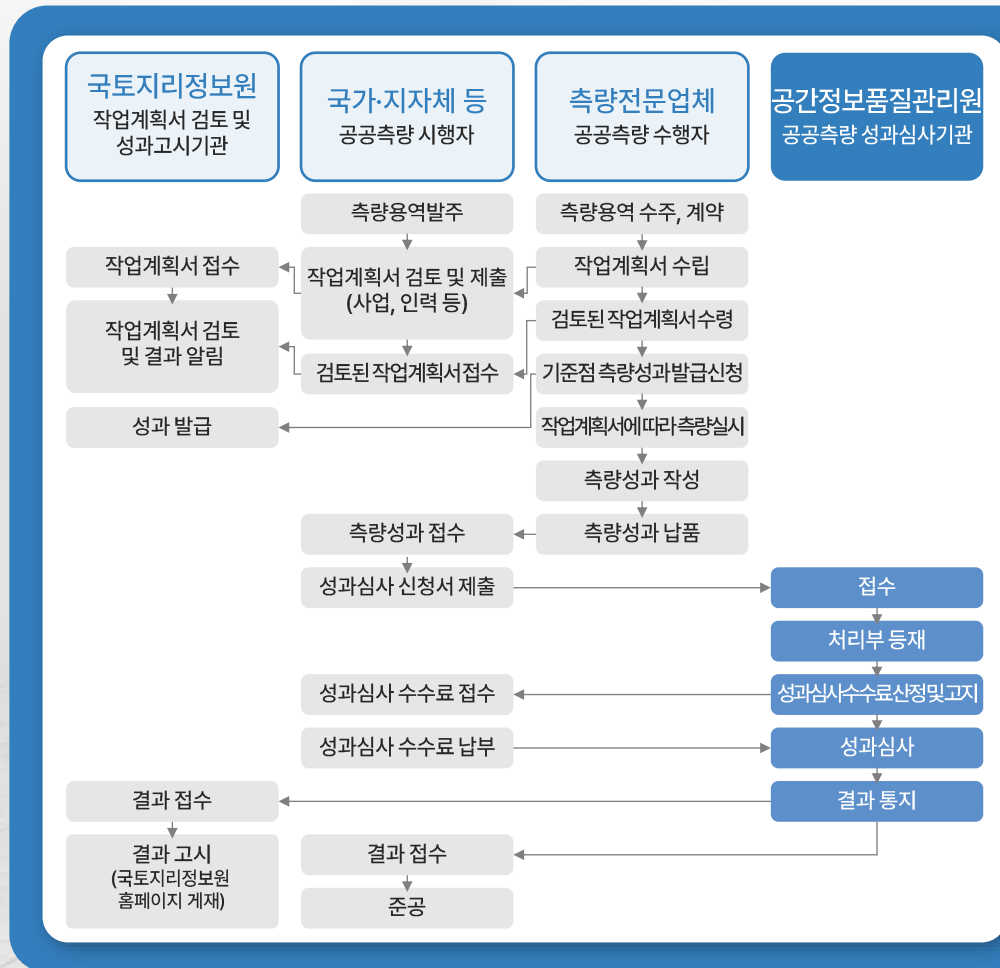


지하시설물측량



그 외 지도제작, 지하공간통합지도제작, 수치주제도 제작, 실내공간정보구축, 정밀도로지도제작 등 17개 측량
공공측량 성과심사 종류 (17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05 공공측량 절차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공공측량 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 (공공측량실시 3일 전까지)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 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결과 통지 국토지리정보원 → 공공측량 시행자
- 측량작업 실시 공공측량 수행자(측량업자) 법 제39조 측량기술자
- 작업완료 성과제출 공공측량 수행자 → 공공측량 시행자
- 측량성과 사본제출 공공측량시행자 → 성과심사기관(공간정보품질관리원)시행규칙 제22조
- 심사 수수료 산정 및 고지 성과심사기관 → 공공측량 시행자 또는 수행자
- 심사비 납부 공공측량 시행자 또는 수행자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공공측량 성과심사 성과심사기관 (처리기간 20일 이내)
- 심사결과 통보 및 고시 성과심사기관 → 공공측량 시행자 → 국토지리정보원(홈페이지고시)
- 준공 공공측량 시행자
- 성과보관, 열람 및 교부 공공측량 시행자, 국토지리정보원장(열람, 복제, 발급)

06 건설공사 시행과정별 공공측량 절차도

-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공공측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구성)



공공측량 제도가행으로 건설공사의 정확도 확보

07 공공측량 제도 관련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측량이 공공측량에 해당하나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공공측량 시행자로 규정되는바, 동 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든 측량은 공공측량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도의 정확도를 필요하지 않는 등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공공측량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공공측량 지정고시 요청 문서 발송(시행자) → 지정고시 대상 여부 검토(지리원)
→ 검토결과 통지 및 공공측량 지정고시(지리원) → 지리원 홈페이지에서 공공측량 지정고시 확인(시행자)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 공공측량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데 공공측량으로 실시하나요?

해당 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측량 시행자는 해당하지 않아 공공측량으로 실시하셔야 하며, 제3조는 일반측량이지만 공공의 이해와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공공측량으로 지정받아야 하는 규모입니다.

설계에 수반되는 측량을 공공측량으로 해야하나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4조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제44조 [별표2] 각 공종별 측량항목 및 기준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발주청이 별도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측량의 공공측량 지정·고시란 무엇인가요?

일반측량 중 공공의 이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확도 확보 등의 목적으로 공공측량으로 지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측량의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 등인 경우에만 공공측량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설계시와 GIS 구축 시 공공측량을 수행하면 중복 실시 되는 게 아닌가요?

설계 시 이루어지는 측량은 지형현황측량, 기준점(삼각, 수준)측량, 종횡단측량 등으로 설계단계에서 지형현황을 정확하게 측량함을 목적으로 하고, GIS 구축은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이 설치된 후 설치된 시설물의 준공 위치를 정확하게 측량함을 목적으로 각각 다른 현황이 측량되어 중복이 아닙니다.

08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국토정보플랫폼의 업무지원서비스 내 공공측량관리에서는 어떤 업무를 처리할 수 있나요?

국토정보플랫폼의 업무지원서비스 내 공공측량관리는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검토 결과 확인 및 공공측량 검색 등 업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http://map.ngii.go.kr/nw/common/main/mainPage.do>를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세부 사용방법은 플랫폼 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제출 및 검토 결과 확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업계획서 검토 요청 공문 발송(시행자) → 국토정보플랫폼에 작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시행자) → 작업계획서 검토 및 결과 통지(지리원) → 국토정보플랫폼에서 검토 결과 확인(시행자)

작업계획서 작성이 지연된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측량 시작 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측량이 먼저 시작되었거나 이미 마무리된 이후에 작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지연사유서 양식을 받아 작업계획서 검토요청 공문에 붙임 파일을 포함하여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검토된 이후 작업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업계획서 변경 요청 공문 발송(시행자) → 국토정보플랫폼에 작업계획서 변경 승인 요청(시행자 또는 수행자) → 요청사항 검토(지리원) → 국토정보플랫폼에서 변경된 작업계획서 확인(시행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검토결과 확인 후 처리 절차가 궁금합니다.

작업계획서가 검토된 경우에는 공공측량을 실시한 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성과심사를 신청하면 됩니다.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작업계획서 내용을 수정 후 재검토 요청하여야 합니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는 왜 변경해야 하나요?

작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17조 ②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가 공공측량을 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09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공측량 성과심사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공공측량시행자(수행자)는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우편(등기)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성과심사 접수시 제출 필요 서식 모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iqms.or.kr/M1001050/board_view.do?idx=293997)

성과심사 수수료는 누가 납부하나요?

성과심사 수수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신청을 하는 자가 납부하는 법정수수료입니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제2항에 따라 용역계약서에 심사수수료가 반영된 경우에는 시행자의 위임을 받아 수행자가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과심사 기간은 며칠 걸리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기상악화, 물량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서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를 심사결과서에 첨부하여 통지하고 있습니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는 통지된 공공측량성과의 오류를 즉시 수정하여 심사수탁기관인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과심사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과심사수수료는 관련 기준*에 따라 측량의 종류 및 심사 물량 등을 적용하여 산정되며, 사업별 상세 금액은 공간정보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수수료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iqms.or.kr/M1001040/board.do>)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 관련 [별표13]

기존에 고시된 측량성과를 공공측량에 사용한 경우, 기 고시된 성과도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측량의 기초로 사용한 기존에 고시된 성과는 성과심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고시된 성과를 수정, 갱신한 경우에는 성과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